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14.

강준현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4.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 (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11차 정무위원회 (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준현의원)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단 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39,000여명인 6·25참전유공자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8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공법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있음.

□ 동 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단체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재일학도의용군인¹⁾ 본인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단체의 회원은 2명, 회원 평균 연령은 97세(2024년 12월 기준)임.

○ 이에 대하여, 현행법이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만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신규 회원의 발생은 없고, 기존 회원의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단체의 존

1)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강제되지 않음에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을 의미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한 사람은 제외한다)

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단체의 존속을 도모하고, 단체의 설립취지가 계승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 적인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으로 추가되는 인원은 27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훈단체의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유공자의 유족을 보훈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유공자 본인의 신체적 희생(상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가족에게 제대로 부양·양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하여, 그 유족이 단체활동을 통한 상부상조와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공법단체 중 신체적 희생이 없는 유공자 단체는 모두 유공자 본인만이 보훈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신체적 희생이 없는 유공자 본인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유공자 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고령화 문제를 지니고 있는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들 단체도 회원 자격 확대 요구가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²⁾³⁾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당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989년 동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할 당시 본인만을 회원으로 한 설립취지, 단체의 명칭 등을 고려할 때 단체의 정체성·상징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련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2) 관련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 -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안, 의안번호 220093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안, 의안번호 220309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안, 의안번호 2203205호)

-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안, 의안번호 2202446호)

4) [참고] 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p.9)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수정하여 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7일 정무위원장

나.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을 회원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람이 회원이 되도록 수정함(안 제3조제8호 단서).

7.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을 회원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람이 회원이 되도록 수정함(안 제3조제8호 단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8호 단서 중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를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회원) ----- ----- ----- ----- ----- ----- --.	제3조(회원)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8. ----- ----- ----- ----- ----- <u>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u>	8. ----- ----- ----- ----- ----- <u>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u>

9. (생 략)	<u>각 호에 따른 선순위</u> <u>자로 하되, 순위가</u> <u>같은 사람이 2명 이</u> <u>상인 경우에는 나이</u> <u>가 많은 사람이 우선</u> <u>한다.</u> 9. (현행과 같음)	<u>-----선순위자</u> <u>중 나이가 많은 사람</u> <u>으로 하되, 유족 간</u> <u>의 합의로 1명을 지</u> <u>정하는 경우에는 그</u> <u>사람을 회원으로 한</u> <u>다.</u> 9. (개정안과 같음)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사람”을 “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 (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 다.	제3조(회원)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 에 해당하는 <u>사람</u> <단서 신 설>	8. ----- ----- ----- ----- <u>사람과 그 유족</u> <u>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u> <u>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u> <u>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u> <u>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u> <u>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u> <u>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u> <u>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u> <u>은 사람으로 하되, 유족 간의</u> <u>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u> <u>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u> <u>다.</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